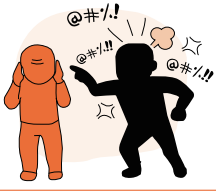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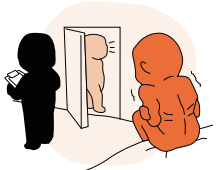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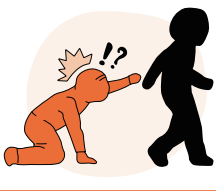


노인학대예방 함께해요!

노인학대의 종류

	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	정서적 학대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	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	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
	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	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노인학대 신고의무

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

-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‘노인학대 신고의무자’로 규정함
-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

☎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

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☎ 1577-1389

보건복지부 ☎ 129

노인학대 신고앱 ‘나비새김(노인지킴이)’



안드로이드 다운로드
바로가기(QR코드 스캔)



아이폰 다운로드
바로가기(QR코드 스캔)